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이영실 의원 외 17명

나. 의안번호: 제2761호

다. 발의일자: 2025. 5. 26.

라. 회부일자: 2025. 5. 29.

2. 제 안 사 유

- 최근 서울시에서 이륜자동차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개조 및 야간 소음으로 시민 생활환경 침해가 심각해져 이륜자동차 소음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또한, 현행 법령은 국가 차원의 일반적인 소음 관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특수한 도시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본 조례는 소음 관리 기본체계 확립 및 관리계획 수립,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력 강화, 교육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기본체계 확립(안 제2조~제4조).

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라.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운영(안 제6조).

마. 교육 및 지원(안 제7조).

바. 홍보사업 운영(안 제8조).

사. 행정·재정적 지원(안 제9조).

아. 표창제도 도입(안 제10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도로교통법」,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5. 검 토 의 건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까지의 총칙 규정과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부터 제10조(표창 등)까지의 실체 규정 등 총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조항	조 제 목	내 용
총칙	제1조	목적	·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	정의	· 이륜자동차, 운행, 소음 등 주요 용어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조례 우선 적용
실체	제5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소음 관리계획 수립 의무 및 자치구 자료 제출 요청
	제6조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실무협의체 설치 근거 및 기능·구성·운영 사항 규정
	제7조	교육 및 지원	· 소음관리 담당자 교육 및 전문기관 위탁·지원
	제8조	홍보사업	· 시민 대상 소음 저감 홍보사업 추진
	제9조	재정지원 등	· 자치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	표창 등	· 소음 관리 유공자에 대한 표창

나. 검토의견

- 2025년 3월 현재, 서울시 등록 이륜자동차는 426,240대로 전체 자동차의 13.4%를 차지¹⁾하고 있고 최근 레저 및 배달 문화 확산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유발되는 소음에 대한 단속 실적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륜자동차 운행 소음은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소음 발생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이, 소음기 불법 개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치구 교통 부서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자치구 환경 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발표²⁾한 이륜자동차 관련

1) 서울시 자동차 등록(월별/구별) 통계(서울열린데이터광장, '25.4.15. 기준)

2) 오토바이 소음 민원 2배 늘었는데, 단속은 제자리걸음(김위상 국회의원 보도자료, '24.10.8.)

소음 민원 및 과태료 부과 현황(2019년~ 2023년)에 따르면,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과태료 부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서울시 과태료 부과실적 없음).

- 본 제정안은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행정 미비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과태료 부과가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바임.

〈2019~2023년 전국 및 서울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국	민원	298	933	2,170	2,450	4,391
	과태료	1	15	41	45	50
서울	민원	53	70	126	259	463
	과태료	0	0	0	0	0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총칙 규정으로 조례 체계와 내용상 무리 없이 구성³⁾되어 있음.
- 안 제5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 실무 협의체 운영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안 제6조는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전문 기관 등을 포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단속 및 점검 계획수립 지원, 기술적·정책적 분석 및 자문 등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총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소음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재정 지원, 포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견 없음.

3)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4.)

- 다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혀 없었던 만큼 이륜자동차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의지 및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할 것임.